
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\$\text{\$\Pi\$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655/전송(02)790-8911 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/ 보험급여팀장 고영옥 [6572]/ 팀원 문성현 [6585]/E-mail: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5292

시행일자 2024. 3. 4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(2024. 2. 26. ~ 2024. 3. 3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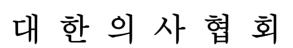
- 1.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(건강보험 고시안내)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- 2. 이에, 2024년 2월 26일 ~ 3월 3일까지 「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>공지·뉴스 > 건강보험 고시 안내」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.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연번	안내 일자	고시 번호	제 목
1	2024.2.27.	심평원 공고 제2024-40호	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 개정(3차 상대가치 개편 및 만 나이 관련 법률 개정 등에 따라 항목별 코드구조 등 개정)
2	2024.2.27.	제2024-29호	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
3	2024.2.27.	제2024-30호	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 일부개정('캡슐내시경검사' 항목 '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' 중분류 신설)
4	2024.2.27.	제2024-31호	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 안내
5	2024.2.28.	제2024-29호	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고시 정정(GY-DRG TROCAR SET(BLADELESS TYPE) 코드 변경(기존 : M2052058 → M2052158))
6	2024.2.28.	[고시 아님]	[고시아님]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(15건 추가)

7	2024.2.29.	제2024-33호	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 일부개정(일반면역검사-HIV항체-간이검사 등 총 5건 적용일 변경 및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체 본인부담률 90%변경,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관련 협회 명칭 변경)
8	2024.2.29.	제2024-34호	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고시 일부개정
9	2024.2.29.	제2024-35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 (에이즈검 사의 급여기준(적용대상 등) 일부 변경, (정정사유) HIV간이검사 시행이 필요 한 경우 구체화 및 시행일자 변경('24.3.1 → 7.1))
10	2024.2.29.	제2024-37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일부개정 안내
11	2024.2.29.	제2024-38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(PEDIVAS BLOOD PUMP 급여기준 신설, 근이완감시용 SENSOR급여기준 개정 등)
12	2024.2.29.	제2024-39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(캡슐내시경검사 (대장)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신설,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관련 급여기준 신 설,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관련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)
13	2024.2.29.	심평원 공고 제2024-48호	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(신설 2건, 변경 1건, 삭제 3건)

※ 건강보험 고시 안내(URL) : http://www.kma.org/notice/sub16.asp. 끝.

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